



MINI Market Report

국가	일본
제품	작두콩, 친환경하루견과, 유기호두기름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CONTENTS

I. 일본 마케팅 방안	1
1. 일본 시장 특징	1
2. 일본 진출 TIP	2
II. 일본 시장 정보	4
1. 일본 수입 추이	4
2. 일본 소비 동향	9
III. 일본 가격 정보	15
1. 일본 작두콩차 판매 현황	15
2. 일본 믹스너츠 판매 현황	18
3. 일본 호두기름 판매 현황	19
IV. 일본 유통 정보	20
1. 일본 유통경로 및 구조	20
V. 일본 통관 정보	23
1. 관세 현황	23
2. 통관 절차	24
VI. 일본 검역 정보	29
1. 차류의 수입 관련 규제	29
2. 견과류의 수입 관련 규제	30
3. 검역 절차	32
4. 관련 제도	34
VII. 일본 라벨링 정보	35
1. 라벨링 규정	35
2. 관련 정책	42
VIII. 일본 바이어 정보	45

※ 참고자료

I 일본 마케팅 방안

1. 일본 시장 특징

□ 일본 차 시장 동향

- 녹차 등 일반 차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감소세
 - 잎차의 수요량이 크게 감소하여, 티백이나 드링크 타입의 차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차 시장규모가 줄어들고 있음
 -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세습이 검출되어 소비자가 기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출하 제한도 하는 등, 차 농가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전체적인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간편한 티백 타입의 차는 성장세를 보여, 일본 소비자가 간편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건강차 시장은 꾸준한 증가세
 - 차 시장이 감소함에 따라 차의 대용물이 될 수 있는 커피 및 기타 차류의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
 - 커피, 녹차를 제외한 기타 차류는 일본에서 ‘건강차’라 불리며, 최근 건강차 시장은 2013년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2014년에도 증가 전망
 - 루이보스, 작두콩, 우엉, 검은콩 등 다양한 원료의 차가 등장하여 대부분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미용 및 다이어트 목적으로 여성 구매자층이 크게 확대되었음
 - 그 외에도 건강 유지나 멘탈 케어 등의 목적으로 각종 허브티와 건강기능성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차 등이 인기
 - 주요 판매업체들도 각종 차 원료의 기능성이나 좋은 맛을 어필하며 판촉 활동에 힘을 쓰고 있음

□ 일본 과자 시장 동향

- 건과류는 과자류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널리 소비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지방이 많아 살이 찌기 쉽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 건과류의 건강 효과가 널리 알려지고 있음
- 최근 소비자의 건강 지향성에 따라, 건과류 조제품의 일종인 그래놀라가 아침식사대용품으로 떠오르며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유통과자 시장은 2009년도부터 축소 경향에 있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여러 식료품이 부족해진 가운데 과자류에 폭넓은 수요가 생겨났고, 특히 재해 대비용 비축분의 수요도 높아져 캔과자류 등이 대폭 신장한 바 있음

□ 일본 유통 동향

- 전통적으로 일본의 유통 구조는 매우 복잡하며 도매업부터 소매업까지 모든 물류 단계를 담당하는 벤더의 지배력이 강하였으나, 최근 유통경로나 소비성향의 다양화 등으로 벤더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음
- 수입 형태 또한 종합 상사나 수입 총 대리점 등 전문 수입업자가 수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대형 소매상이나 도매상에 의한 개별 수입, 개인 수입 등 수입의 형태 또한 다양화되고 있음
-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유통업계와 도소매업계 모두 타격을 받고 있으며, 각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PB상품을 개발하고 대규모 세일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음

2. 일본 진출 TIP

□ 작두콩차

- 일본에서는 기타 차류의 통칭이 ‘건강차’인 만큼, 차 원료들의 건강기능성은 널리 알려져 있는 편이며 한 번 마셔본 후 맛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구매를 반복하는 반복구매층도 많음

-
- 작두콩의 영양성분 또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건강차 중 많은 작두콩차 제품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있는 여성 소비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구강 관리나 노화 방지,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내세우고 있는 마케팅이 많음
 - 최근 잎차 소비량이 감소하고 티백 타입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물병의 보급으로 집 밖에서도 간편하게 차를 우려먹을 수 있는 티백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남
 - 시판되고 있는 작두콩차 또한 인기 제품은 대부분이 티백 형태로, 포장 형태로서 직접 볶는 등 조리할 필요가 있는 제품은 그리 많지 않음
 - 티백보다 더욱 간편한, 바로 마실 수 있는 음료 타입의 제품도 크게 선호되고 있음
 - 일본인은 마실 때의 편안함 또한 중시하여, 맛이 너무 강하거나 자극적인 것보다는 묵념감이 편안하고 맛이 있는 제품이 선호됨
 - 한국산 차 제품은 적은 편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일본에서 소비되는 건강차는 루이보스나 각종 허브 등 서양에서 유래된 차를 제외하면, 타타리메밀, 작두콩, 우엉, 검은콩 등 전통차는 수입품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산 또는 대만산
 - 일반적으로 일본인 소비자들은 자국산 선호 경향이 매우 강하나, 수입품이라면 중국산 물건보다는 한국산 물건의 질이 더 좋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념이 있으므로, 일본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 중국산보다 한국산을 찾는 소비자가 생길 수 있을 전망
 - 수입업자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 한일관계 악화 등의 이슈가 있으나, 차 소비자는 품질과 맛을 중시하므로 품질이 괜찮고 가격도 중국산에 비하여 크게 비싸지 않다면 수입 의향은 있다고 함

II 일본 시장 정보

1. 일본 수입 추이

□ 작두콩차

- 작두콩차는 커피, 녹차를 제외한 차류로서 전체 식품 카테고리에서 「기타 커피 대용물」로 분류되어 HS CODE는 「2101.30」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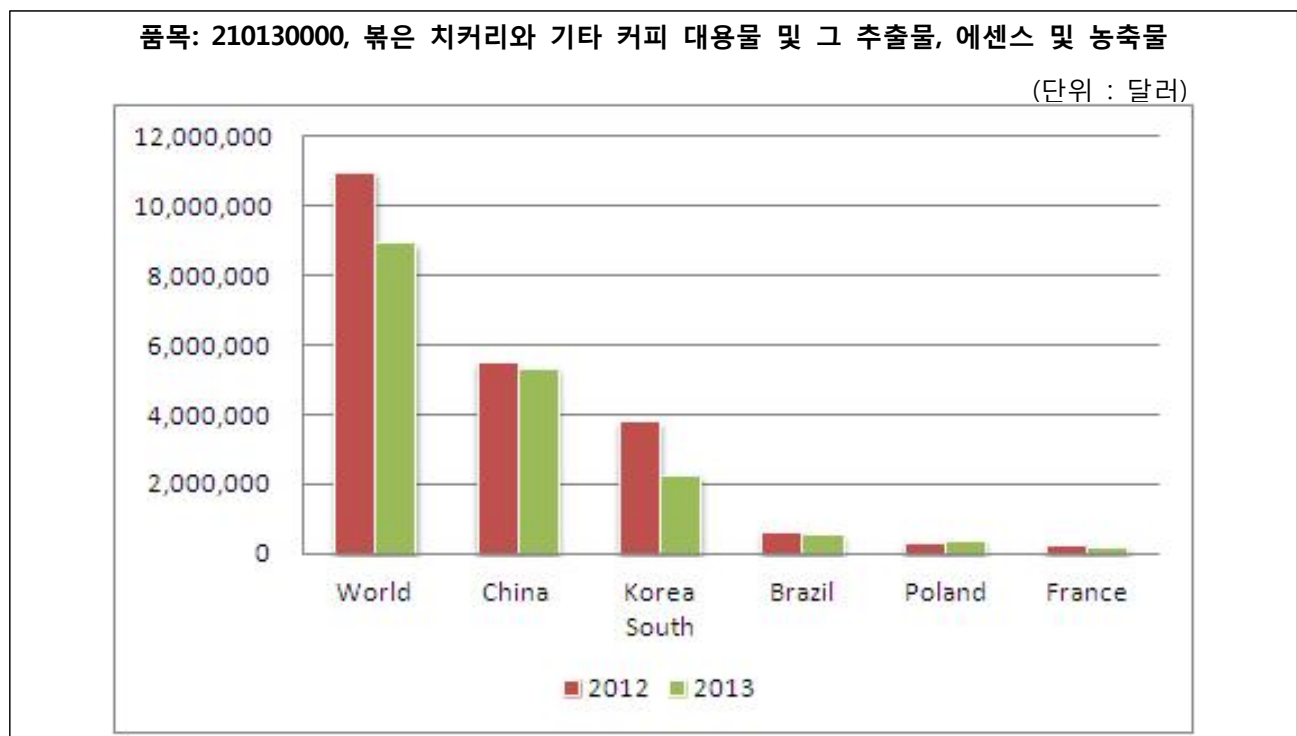
< HS CODE >

HS CODE	품명
2101	커피, 차 또는 마태차의 추출물, 에센스 및 농축물 및 이것들을 원료로 하는 조제품, 커피, 차 또는 마태차를 원료로 하는 조제품 및 치커리와 기타 커피 대용물(볶은 것) 및 그 추출물, 에센스 및 농축물
2101.30.000	치커리와 기타 커피 대용물(볶은 것) 및 그 추출물, 에센스 및 농축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HS CODE 「2101.30.000」에 대한 일본 수입 추이

< 일본 기타 차류 수입 통계 >



Partner Country	United States Dollars		% Share		% Change
	2012	2013	2012	2013	2013/2012
World	10,996,272	8,939,340	100.00	100.00	- 18.71
China	5,518,416	5,332,241	50.18	59.65	- 3.37
Korea South	3,798,095	2,264,037	34.54	25.33	- 40.39
Brazil	644,548	536,437	5.86	6.00	- 16.77
Poland	277,839	354,109	2.53	3.96	27.45
France	221,688	195,313	2.02	2.18	- 11.90
Switzerland	117,613	119,518	1.07	1.34	1.62
Germany	74,688	50,516	0.68	0.57	- 32.36
Italy	59,119	49,111	0.54	0.55	- 16.93
Netherlands	15,912	17,743	0.14	0.20	11.51
India	0	14,628	0.00	0.16	0.00

출처 : GTA (www.tradestatistics.com/gta)

- 일본은 2013년 893만 9,340 달러 규모의 기타 차류를 수입하였으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 브라질, 폴란드 등이 있음
- 일본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3년 중국으로부터 533만 2,241 달러의 기타 차류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약 59.65%, 전년 대비 -3.37% 감소한 수치임
- 중국에 이어 한국이 2위로, 2013년에 226만 4,037 달러의 기타 차류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약 25.33%, 전년 대비 -40.39%로 크게 감소한 수치임
- 3위는 브라질로 수입액은 53만 6,437 달러, 4위는 폴란드로 수입액은 35만 4,109 달러로 두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의 약 10%, 대부분의 기타 차류를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차류의 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18.71%로 감소하였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감소율이 특히 크게 나타남

□ 친환경하루결과

- 신선 및 건조 견과류는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HS CODE는 「0801」 및 「0802」로 나타남

- 친환경하루견과와 같은 견과류 조제 식료품의 경우 과실 및 견과류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땅콩의 HS CODE는 「2008.11」, 땅콩을 제외한 기타 견과류는 「2008.19」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 견과류의 HS CODE 분류 예시 >

HS CODE	품명
0801	코코넛, 브라질넛 및 캐슈넛
0802	기타 견과류
2008	과실, 견과류 및 기타 식물의 식용 부분
2008.11	땅콩
2008.11.120	설탕을 첨가한 것
2008.11.291	기타-볶은 땅콩
2008.19	기타
2008.19.228	기타 볶은 견과류
2008.19.229	기타 견과류
2008.97	혼합한 것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HS CODE 「2008.19」에 대한 일본 수입 추이

< 일본 기타 견과류 조제 식료품 수입 통계 >

품목: 200819, 기타 견과류 조제품					
Partner Country	United States Dollars		% Share		% Change
	2012	2013	2012	2013	2013/2012
World	180,826,091	170,295,310	100.00	100.00	- 5.82
China	135,941,506	119,270,626	75.18	70.04	- 12.26
United States	18,420,299	21,762,890	10.19	12.78	18.15
Thailand	5,897,842	5,771,382	3.26	3.39	- 2.14
Australia	5,086,196	5,667,080	2.81	3.33	11.42
France	3,985,728	4,315,538	2.20	2.53	8.27
Philippines	2,504,706	2,537,511	1.39	1.49	1.31
Vietnam	982,050	2,327,371	0.54	1.37	136.99
Korea South	1,357,735	1,816,736	0.75	1.07	33.81
Italy	1,669,942	1,561,020	0.92	0.92	- 6.52
Chile	614,838	791,382	0.34	0.46	28.71

출처 : GTA (www.tradestatistics.com/gta)

- 일본은 2013년 1억 7,029만 5,310 달러 규모의 기타 견과류 조제품을 수입하였으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이 있음
- 일본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3년 중국으로부터 1억 1,927만 626 달러의 기타 견과류 조제품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약 70.04%, 전년 대비 -12.26% 감소한 수치임
- 중국에 이어 미국이 2위로, 2013년에 2,176만 2,890 달러의 기타 견과류 조제품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약 12.78%, 전년 대비 +18.15% 증가한 수치임
- 3위는 태국(577만 1,382 달러, -2.14%), 4위는 호주(566만 7,080 달러, +11.42%)로 각각 3%대의 비슷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점유율은 2%선 이하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 한국은 8위로, 한국으로부터 2013년 181만 6,736 달러의 기타 견과류 조제품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약 1.07%, 전년 대비 +33.81%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기타 견과류 조제품의 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5.82%로 감소하였음

□ 유기호두기름

- 유기호두기름은 기타 식물성유지로 분류되어 HS CODE는 「1515.90」으로 나타남

< HS CODE >

HS CODE	품명
1515	기타 식물성유지 및 그 분획물
1515.90.520	기타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HS CODE 「1515.90.520」에 대한 일본 수입 추이

- 일본은 2013년 2,444만 8,315 달러 규모의 기타 식물성유지를 수입하였으며, 주요 수입국은 이탈리아, 미국, 인도 등이 있음

< 일본 기타 식물성유지 수입 통계 >

품목: 151590520, 기타 식물성유지					
Partner Country	United States Dollars		% Share		% Change
	2012	2013	2012	2013	2013/2012
World	30,740,860	24,448,315	100.00	100.00	- 20.47
Italy	6,046,697	7,225,809	19.67	29.56	19.50
United States	4,120,935	3,992,968	13.41	16.33	- 3.11
India	11,918,743	3,047,989	38.77	12.47	- 74.43
France	1,383,491	2,556,776	4.50	10.46	84.81
Spain	1,860,028	2,514,086	6.05	10.28	35.16
Malaysia	560,702	1,490,279	1.82	6.10	165.79
Chile	745,096	556,523	2.42	2.28	- 25.31
China	787,133	468,949	2.56	1.92	- 40.42
Peru	420,530	353,079	1.37	1.44	- 16.04
New Zealand	268,694	341,818	0.87	1.40	2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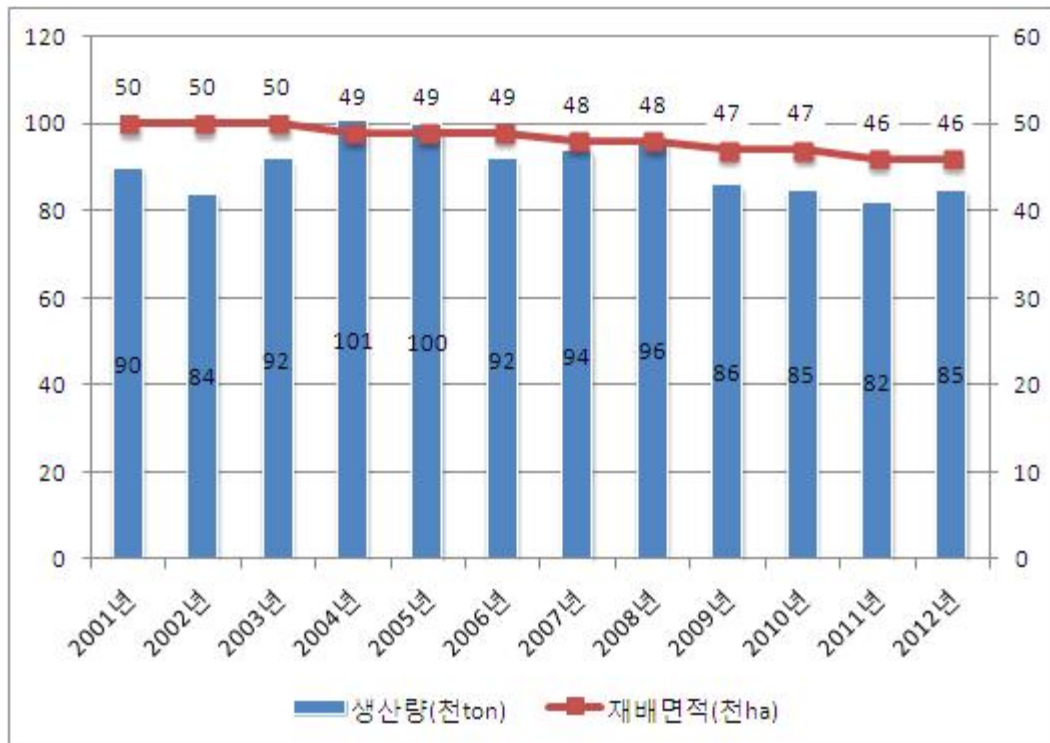
출처 : GTA (www.tradestatistics.com/gta)

- 일본의 최대 수입국은 이탈리아로 2013년 이탈리아로부터 722만 5,809 달러의 기타 식물성유지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약 29.56%, 전년 대비 +19.50% 증가한 수치임
- 이탈리아에 이어 미국이 2위로, 2013년에 399만 2,968 달러의 기타 식물성유지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약 16.33%, 전년 대비 -3.11% 감소하였음
- 3위는 인도로 2013년 304만 7,989 달러를 수입하여 전체의 약 12.4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74.43%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한국은 20위로, 한국으로부터는 2013년 4만 4,539 달러의 기타 식물성유지를 수입, 전체의 약 0.18%로 미미한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식물성유지 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20.47%로 감소하였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전년 대비 -33.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2. 일본 소비 동향

□ 일본 차 시장 동향

< 차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www.maff.go.jp)

- 재배면적은 거의 보합세이며, 생산량은 녹차음료 수요의 증가로 2004년산이 10만 톤을 넘을 정도로 일시 증가했으나, 그 후는 약 9만 톤으로 감소 추이
- 특히 최근 잎차 소비량이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녹차 음료의 수요 또한 2004년~2005년의 봄 이후 감소 및 보합세를 보여 생산량 또한 85,000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성 세슘 검출 문제로 몇 개 지역에 출하 제한이 걸리는 등 큰 피해가 있었음
- 소비자의 간편함 추구로 티백 제품이 선호되고 잎차의 소비량은 감소 추이를 보이던 중, 세슘 검출로 인해 전체적인 차 소비량이 급감하였음
- 뿌리와 먼 부분만 채취하는 깊게 베기[深刈り] 방법의 유효성이 검증됨에 따라

산지 지도 및 홍보를 행하여, 2013년산 차부터는 모든 산지에서 기준치 이하가 되어 출하 제한도 서서히 해제되고 있음

- 차 시장 규모의 감소와 대조적으로 커피나 커피머신 및 허브차 등 기타 차류('건강차'로 통칭)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차 시장 규모 감소의 큰 원인은 잎차의 수요 감소로, 티백 등 인스턴트 제품은 오히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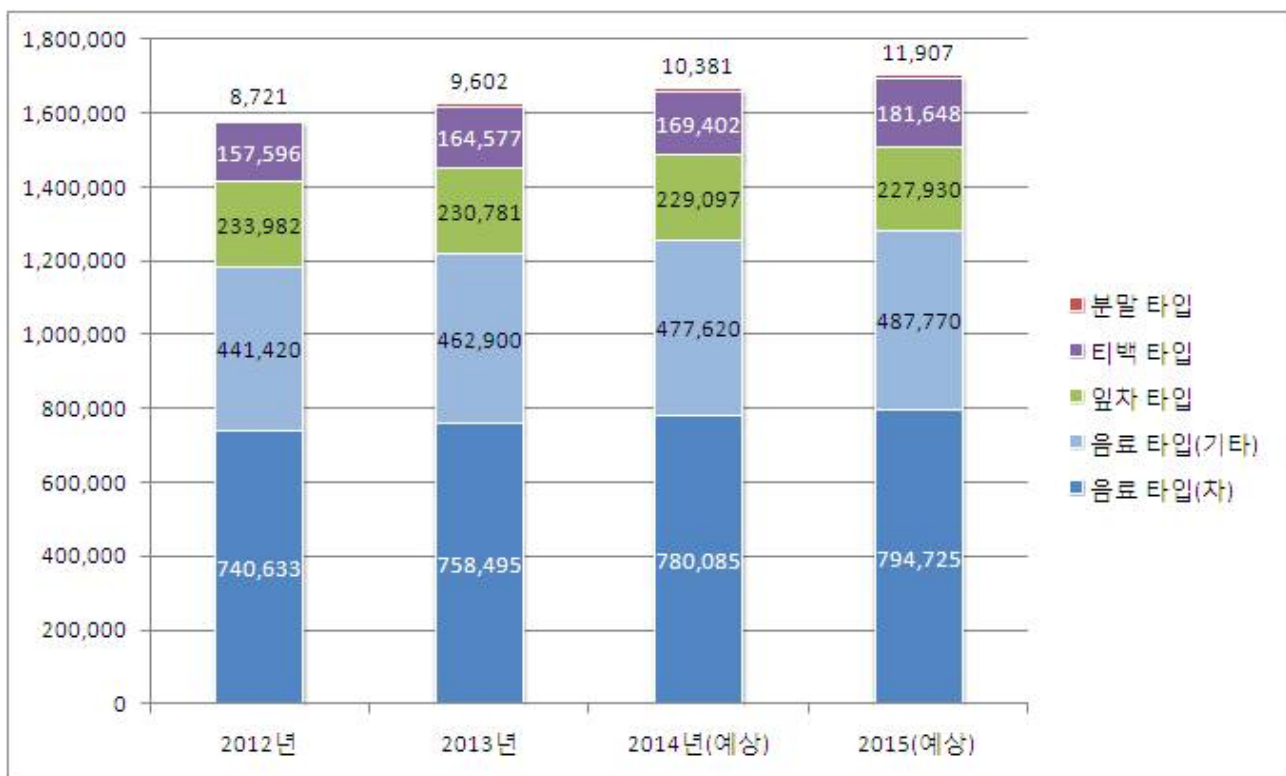
□ 건강차 시장 동향

- 건강차 시장은 전년비 4% 증가한 560억 엔 규모로,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임
- 미용 및 다이어트 소재의 수요가 증가하여, 생강, 우엉, 작두콩, 결명자, 검은콩, 두충, 뽕잎, 보이차, 고려인삼, 김네마, 살라시아, 양파, 카모마일, 캔들부쉬 등의 매출이 성장하였음
- 또한 직장인 여성, 임산부, 육아 세대 등 20~30대 여성의 신규 수요가 증가하여, 카페인 없는 디카페인 차, 허브티, 민들레차, 루이보스 차 등이 호조
- 루이보스, 살라시아, 작두콩, 마카 등의 인기 상승
- 2014년 상반기 건강차 시장은 특별한 히트 상품은 없었으나, 살라시아, 뽕잎, 작두콩, 루이보스, 마카, 마테, 우엉 등 생활습관대책이나 미용 및 다이어트 관련 상품이 안정적인 매출을 보였으며, 논카페인 허브티의 수요도 증가하여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이를 보임
- 주요 각 사의 청취 조사에 따르면, 전년비 2~6% 성장한 기업이 많았으며, 주요 구매층인 중장년층과 더불어 20~30대 여성이 신규 수요자로 떠올라 하반기도 생활개선대책과 미용 및 다이어트 효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하는 기업이 많음
- 대지진 이후 건강 의식 및 절약 지향이 한층 높아져 가정에서도 건강차를 음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 외에도, '마이보틀'(개인 물병)의 보급 또한 건강차 붐에 한몫 하였음

- 소매 시장에서는 작년에 이어 미용 및 다이어트나 항 당뇨 등 섭취 목적이 명확한 건강차와 논카페인 소재가 인기
 - 건강차 주요 제조업체에 따르면, 항 당뇨 목적으로 뽕잎 및 살라시아, 미용 목적으로 루이보스 및 마카, 다이어트 목적으로 보이차, 우롱 및 마테, 구강 관리 목적으로 작두콩, 멘탈 케어 목적으로 카모마일 등의 수주량이 증가함
- 지난 몇 년 동안 매출이 성장한 우영차와 생강차는 클래식 소재로 안정된 매출을 확보함

< 타입별 무설탕음료 시장 규모 >

(단위 : 백만엔)



출처 : 일본 SK전략기획 (www.senryaku.biz)

- 유통 경로별 동향
 - 주요 판로는 통신판매, 방문판매, 다단계 루트(네트워크 마케팅), 드럭스토어, 양판점, 전문점 등임
 - 또한 외식업 루트는 건강지향 메뉴를 강화하며 건강차나 건강기능차를 도입하여 고객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통신판매 루트는 상품 투입이 활발하여, 대형 통신판매 제조사가 블렌드차나 허

브티를 주력 상품으로서 채용하는 움직임이 있음

- 식품 및 약국 루트는 건강차 매장의 면적은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히트 상품 및 꾸준히 판매되는 상품 등으로 진열 상품을 제한하며 상품 회전율을 높여 이익 중시의 판매가 현저함
- 양판점 루트에서는 율무, 우롱, 블렌드차 등 500~1,000엔 가격대의 상품에 인기가 집중
- 에스테 및 미용 루트에서는 허브티를 취급하는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루이보스, 카모마일 등의 미용 소재나 세인트존즈워트, 라벤더 등을 배합한 멘탈케어 소재의 도입이 진행 중

- 업계 동향

- 「산토리 웰니스」: 자회사의 커넥트를 통해 백화점, 전문점 루트의 직영 허브샵에서 150종 이상의 허브티 판매를 개시
- 「티 라이프」: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루이보스 차의 판촉을 강화하였으며, 보이, 검은콩, 두충 등을 배합한 '메타보메차'나 민들레 뿌리를 커피 맛이 나게 제조한 '포포탄' 등의 판매 확대를 도모
- 「라쿠텐 시장」의 최근 건강차 히트 상품 랭킹에서 10위 이내에 루이보스 차 5품목, 작두콩 3품목이 랭크에 올랐음
- 「코카콜라」: 지방과 당의 흡수를 억제하는 더블헬스 기능의 건강기능차 '몸튼튼차W'를 4월 7일에 발매, 건강기능차 시장에 본격 진출
- 「아사히 음료」: 4월 16일에 당 흡수와 혈중 중성지방의 상승을 완화하는 건강기능차 '아사히 식사와 함께 16차W'를 투입, 16종류의 소재를 배합한 '16차'는 2010년부터 4년 연속 성장을 거듭하여 작년에는 전년 대비 4% 증가 추이를 보여, 이번 건강기능차를 출시함에 있어 '16차'의 건강 이미지를 활용함
- 「산토리 식품 인터내셔널」: '산토리 흑우롱차', '산토리 참깨보리차'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해 10월에 발매한 '이예몬 특차'는 반년만에 판매 수량이 500만 케이스를 넘는 대히트 상품이 되었음

- 「이토엔」: 작년 6월에 발매한 '건강 루이보스티'의 매출이 순조롭게 상승

□ 작두콩차

- 작두콩차는 건강차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높은 소재 중 하나로, 특히 치아 질환 예방, 구취 제거, 염증 완화 등의 효능이 유명함
- 또한 당뇨 예방, 여성 질환, 축농증, 아토피 등 수많은 효능이 알려져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크게 인기가 높아짐
- 작두콩의 일본 내 주요 산지는 가고시마현으로, 가고시마현이 배경인 2008년 NHK의 인기 대하드라마 「아츠히메」에서 작두콩이 등장한 이후 주목받게 되어 각종 효능이 알려지면서 붐을 일으킨 것으로 보임
- 가고시마현 외에 일본 내에서는 시즈오카현, 오카야마현, 탄바 지방 등에서도 재배되고 있으며, 시판되는 작두콩의 대다수가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인기가 많은 것은 대부분이 상기 산지에서 재배되는 일본 국내산 제품임
- 일본 소비자는 품질과 영양만큼 맛 또한 중시하며, 100% 작두콩차는 쓰다는 의견도 있어, 100%가 아니더라도 보리 등과 섞어 맛있게 제조한 혼합 작두콩차 등의 제품도 인기가 있음

□ 친환경하루견과

- 일본에서 믹스 견과류는 간식 혹은 술안주용으로서 과자류로 분류되어, 세부 품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널리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방이 많은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쉽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 견과류의 맛과 영양, 건강 효과 등이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면서 견과류는 건강한 식품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음
- 최근 소비자의 건강 지향성에 따라 2011년경부터 건강한 아침식사대용으로 각종 곡물, 말린 과일, 말린 견과류를 혼합한 제품인 그레놀라가 떠오르며 호조를 보이고 있음 (2012년 그레놀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9.4%, 생산액은 +55.1% 증가)

- 일본 「야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과자류 중 호조를 보인 품목은 초콜릿, 스낵과자, 건과류, 태블릿 과자 등으로, 전체 과자류 중 건과류(콩과자)의 구성비는 약 3.6%
- 경제성을 지향하는 소비자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PB제품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 그러한 한편, 다소 가격이 높더라도 품질이나 맛에 대한 수요 및 일상생활에서 작은 사치를 누리고 싶다는 수요도 있어, 엄선된 원재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라인의 제품이나 어른을 대상으로 한 제품 등 판매 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 유통과자 시장은 2009년도부터 축소 경향에 있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여러 식료품이 부족해진 가운데 과자류에 폭넓은 수요가 생겨났고, 특히 재해 대비용 비축분의 수요도 높아져 캔과자류 등이 대폭 신장한 바 있음

□ 유기호두기름

- 일본에서 시판되는 호두기름은 식용보다는 목공용 오일이 많으며, 식용 호두기름은 대부분 프랑스산으로, 월넛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올리브유와 비슷한 용도로 판매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내 포털에서 호두기름을 검색했을 시 몸에 좋은, 건강한, 호두기름의 효능 등의 키워드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반면, 일본 포털에는 가구도장용, 목공용 건성유 등의 목공 관련 검색 결과와 유럽산 수입 식용 월넛 오일 판매 페이지 등이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식물성지방, 오메가3, 리놀렌산 등 영양 성분의 표시는 있으나, 호두기름의 건강적 측면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III 일본 가격 정보

1. 일본 작두콩차 판매 현황

□ 각 온라인 쇼핑몰 판매 인기순

－ 라쿠텐 매장 판매 현황

업체명	올라이프서비스	코야마엔	카와모토야
제품 이미지			
제품명	국산 작두콩차 4g * 30포	탄바 작두콩차 3g * 30개	작두콩차 2g * 10p
가격	JPY ¥ 2,700	JPY ¥ 2,700	JPY ¥ 1,000

업체명	오가와 생약	스즈긴	Marche pure
제품 이미지			
제품명	작두콩차 175g(35포)	작두콩차 3g * 30p	작두콩차 2g * 35포
가격	JPY ¥ 1,296	JPY ¥ 2,260	JPY ¥ 1,000

출처 : 라쿠텐 (www.rakuten.co.jp)

－ YAHOO 쇼핑 매장 판매 현황

업체명	야마모토 한방제약	오스트리치팩토리	가바이 농원
제품 이미지			
제품명	100% 작두콩차 6g * 12P	국산 작두콩차 56g (4.0g * 14팩)	국산 붉은작두콩차 3g * 30포
가격	JPY ¥ 398	JPY ¥ 399	JPY ¥ 1,728

업체명	올라이프서비스	쥬로엔	HEART DROP
제품 이미지			
제품명	국산 작두콩차 4g * 30포	작두콩차 3g * 15포	작두콩원기차 3g * 30포
가격	JPY ¥ 2,700	JPY ¥ 648	JPY ¥ 3,302

출처 : YAHOO 쇼핑 (shopping.yahoo.co.jp)

－ Amazon 매장 판매 현황

업체명	야마모토 한방제약	쥬로엔	유우키 제약
제품 이미지			
제품명	100% 작두콩차 6g * 12P	작두콩차 3g * 15포	덕용 작두콩차 3g * 50포
가격	JPY ¥ 463	JPY ¥ 648	JPY ¥ 618

업체명	가바이 농원	올라이프서비스	코야마엔
제품 이미지			
제품명	덕용 국산 붉은작두콩차 3g * 60포	국산 작두콩차 4g * 30포	탄바 작두콩차 3g * 30개
가격	JPY ¥ 3,283	JPY ¥ 2,700	JPY ¥ 2,700

출처 : Amazon (www.amazon.co.jp)

2. 일본 믹스너츠 판매 현황

업체명	코지마야	오스트리치팩토리	미츠와넷
제품 이미지			
제품명	Bar납품용 믹스너츠 1kg	믹스너츠 1kg	가득 355g 믹스너츠캔
가격	JPY ¥ 2,343	JPY ¥ 2,080	JPY ¥ 698

업체명	무인양품	동양너츠	츠바키야
제품 이미지			
제품명	믹스너츠 소금맛 44g	식염무첨가 크러시믹스너츠캔 360g	업무용 골드 나무열매 500g
가격	JPY ¥ 100	JPY ¥ 1,250	JPY ¥ 1,296

출처 : 라쿠텐 (www.rakuten.co.jp)

YAHOO 쇼핑 (shopping.yahoo.co.jp)

Amazon (www.amazon.co.jp)

3. 일본 호두기름 판매 현황

업체명	Cafe de Savon	켄코코무	LA TOURANGELLE
제품 이미지			
제품명	프랑스산 월넛 오일 500ml	프랑스산 GUENARD 월넛 오일 500ml	호두 오일 500ml
가격	JPY ¥ 1,831	JPY ¥ 1,751	JPY ¥ 1,490

업체명	Food Fiesta	AarhusKarlshamn	GABAN
제품 이미지			
제품명	프랑스산 호두기름 1000ml	AarhusKarlshamn 퓨어월넛오일 230g	프랑스산 호두 오일 1L
가격	JPY ¥ 3,207	JPY ¥ 831	JPY ¥ 2,784

출처 : 라쿠텐 (www.rakuten.co.jp)

YAHOO 쇼핑 (shopping.yahoo.c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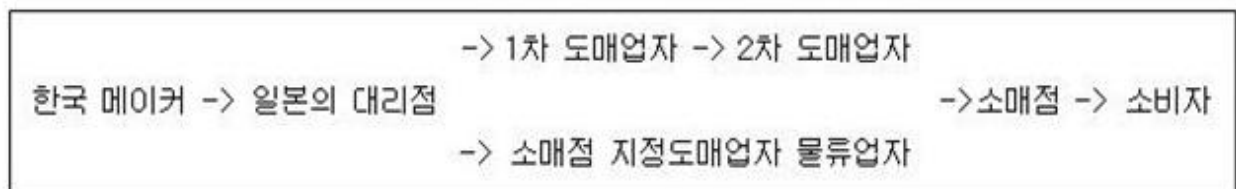
Amazon (www.amazon.co.jp)

IV 일본 유통 정보

1. 일본 유통경로 및 구조

- 전통적으로 일본의 농식품 수입 유통구조는 무역기업 또는 수입업자 → 식품 가공 및 도매업자 → 소매점포(슈퍼마켓, 편의점, 백화점 등) → 최종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였으나, 최근 일본의 5대 무역기업(미쓰비시, 이토추, 미쓰이상사 등)은 수입업 무 일변도에서 벗어나 도매 및 소매부문까지 진출하는 이른바 전방 수직결합(forward vertical integration)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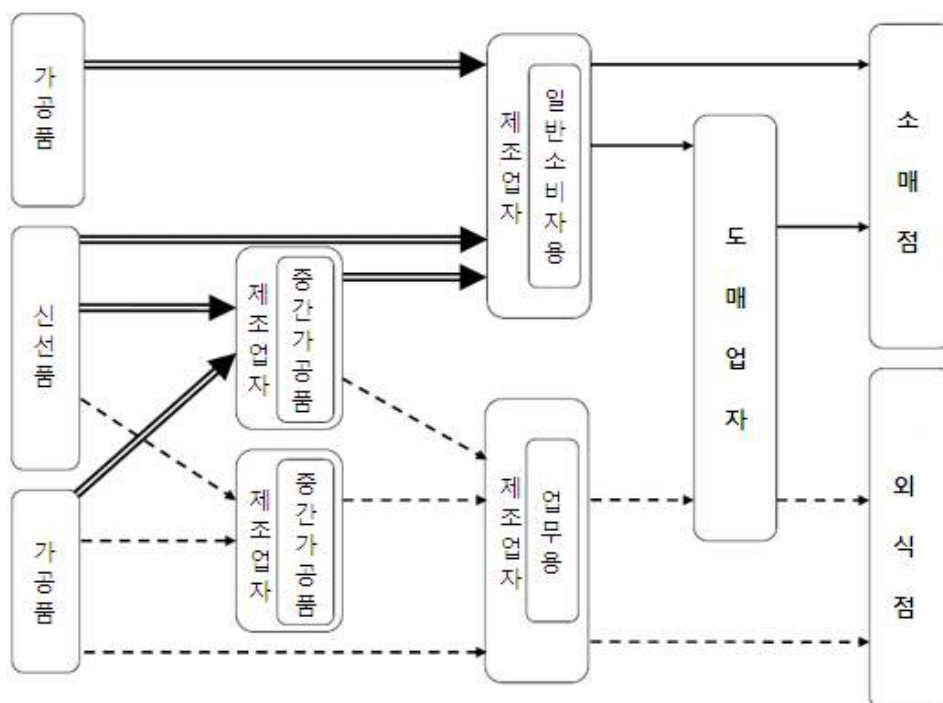
< 최근 일본의 전방수직결합 유통구조 >



출처 : KATI (www.kati.net)

- 가공식품 유통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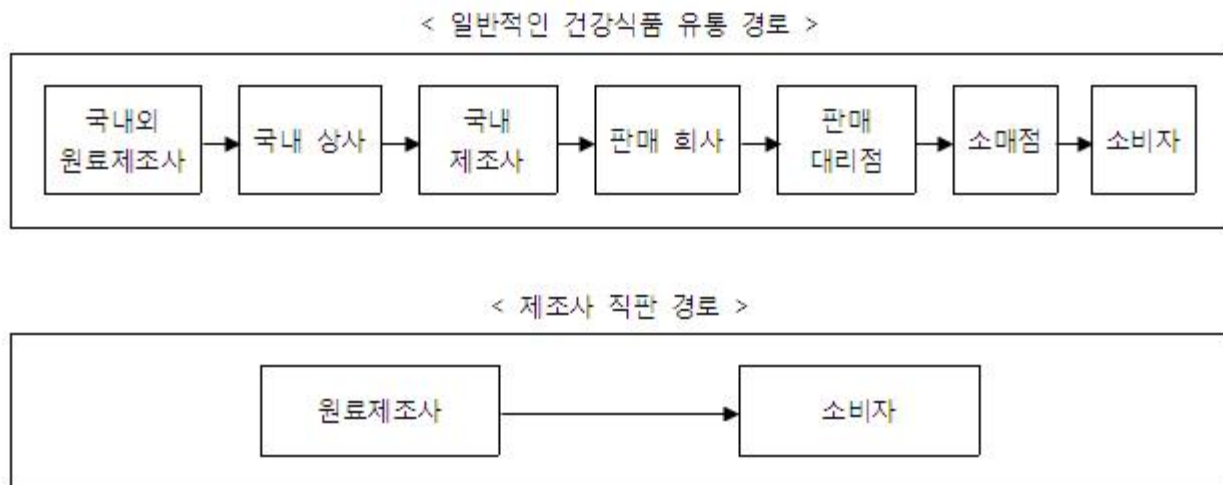
< 가공식품 유통 구조 >



출처 : 일본 식품분석개발센터 SUNATEC (www.mac.or.jp)

-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은 원재료의 생산자로부터 중간가공 및 포장을 거쳐 도매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됨
- 그러나 최근 유통 경로의 다양화로 인해 도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입품을 소비자가 개인수입으로 직접 구입하는 등 유통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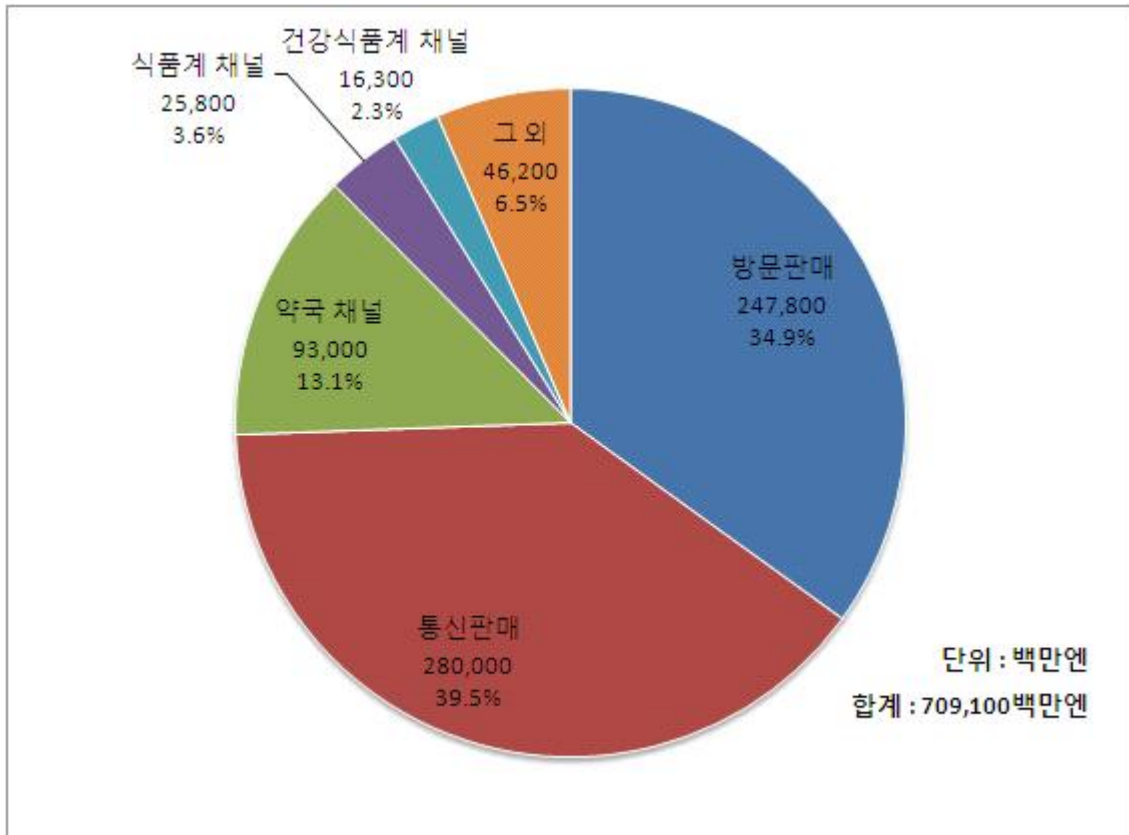
□ 건강식품 유통 경로



출처 : 건강미용관(herbthree.jp)

- 기존 일본의 건강식품 유통 경로는 제조사와 판매사가 분리된 복잡한 유통 구조로 기본적으로 코스트가 높았으며, 소비자들의 ‘건강식품은 당연히 비싸다’, ‘비싼 것은 품질이 좋고 싼 것은 품질이 나쁠 수 있다’ 라는 인식 또한 복잡한 유통 구조와 함께 건강식품의 높은 가격대 형성의 원인이 되었음
- 그러나 건강식품 붐 이후 경쟁 또한 과열되며 영양 면이나 품질에서는 차별화가 이루어지기 힘들자, 각 업체는 가격 경쟁을 시작, 저코스트 실현을 위하여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판 형태가 증가하였음
- 기존 건강식품 시장의 주력 유통채널은 방문판매였으나, 최근 통신판매가 증가하여 현재의 주력 채널이 되어 있음
 - 2012년도 통신판매 채널의 시장규모는 제조사 출하 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01.6%인 2,800억엔이며, 시장 전체에서의 구성비는 39.5%로 상승세

< 2012년도 건강식품 유통채널별 시장규모와 구성비 >



출처: 일본 야노경제연구소 (www.yano.co.jp)

- 방문판매 채널의 구성비는 34.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98.3%인 2,478억엔으로 축소 경향을 보임
- 약국 채널(드럭스토어, 약국이나 약국도매상)의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02.2%인 930억엔이며, 식품계 채널(식료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이나 양판점, 슈퍼마켓 도매상)의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02.0%인 258억엔, 건강식품계 채널(건강식품전문점 도매상)은 전년대비 93.7%인 163억엔
- 특히 편의점에서는 간 기능 개선이나 미용 등의 기능성을 강조한 드링크제 시장이 정착되어, 즉시소비의 수요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순조로운 추이를 보임

1. 관세 현황

□ 관세율

< 관세율 >

제품	HS CODE	품목	기본세율	협정세율
작두콩차	2101.30.000	치커리 기타 커피 대용물(볶은 것) 및 그 추출물, 에센스 및 농축물	8%	6%
친환경 하루견과	0801.31.000	캐슈넛	무관세	무관세
	0802.11.100	비터 아몬드	무관세	무관세
	0802.11.200	스위트 아몬드	4%	2.4%
	0802.31.000	호두	10%	10%
	2008.11.120	땅콩-설탕을 첨가한 것	28%	23.8%
	2008.11.291	땅콩-기타-볶은 땅콩	25%	21.3%
	2008.19.228	기타 볶은 견과류	6%	5%
	2008.19.229	기타 견과류	12.8%	12%
유기호두기름	1515.90.520	기타 식물성유지 및 그 분획물-기타	20.70엔/kg	10.40엔/kg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기타 세금

－ 소비세 (부가가치세)

- 국내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일본의 소비세는 다음의 국내 및 수입거래에 대해서 비과세인 일정 거래를 제외하고 과세되며 2014년 9월 현재 소비세율은 8% (지방소비세 1%를 포함)로 단일 세율임
- 국내거래란 국내에서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대가를 얻어 행하는 자산의 양도 및 대출, 역무의 제공을 의미하며, 수입거래란 보세지역에서 인수되는 화물거래를 의미함
- 금융거래, 자본거래, 의료, 복지, 교육 분야의 일정 거래는 비과세이며, 수출거래나 국제통신, 국제운수 등의 이른바 수출 유사거래도 소비세가 면제되고, 국내거

래를 하는 사업자나 수입거래를 하는 자는 각각 정해진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단, 생산·유통 단계에서 이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매입에 대한 소비세를 매상에 대한 소비세에서 공제함
- 지난 2011년 9월에 취임한 전 재무상 출신 노다 요시히코 현 일본총리는 일본 국채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전체 GDP의 200% 가량) 이른바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세금 수입 증대를 추진해왔음
- 기존 5%의 소비세율은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2 단계에 걸쳐 상향됨

2. 통관 절차

□ 수입통관의 흐름

- 수입항 도착 → 보세지역으로 화물반입 → 수입신고, 납세신고 → 세관에 의한 심사, 검사 → 관세 등의 납부 → 수입허가 → 보세지역으로부터 화물반출 → 수입자 화물 인수의 수순으로 이루어짐

□ 수입신고

- 수입신고 시기

- 수입신고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 보세구역 또는 특별히 허가받은 보세 구역 외의 장소에 반입된 후임
- 다만 특정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박에 물품을 적재한 채 또는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기 전에 신고가 인정되고 있음

- 수입신고자

-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입자를

대신하여 통관업자에 의한 대리 신고가 이루어짐

－ 제출서류

- 수입신고는 통상, 수입(납세)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수입 부문의 품목별(예: 농수산물, 기계 등) 통관 담당 부문에 제출함

－ 수입신고서 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반입서(Invoice)
- 선박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보험료 명세서
- 운임 명세서
- 포장 명세서

－ 이 밖에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 타 법령의 허가 및 승인증(식물방역법 등의 관세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화물의 경우)
- 특혜 원산지 증명서(특혜 관세의 적용을 받을 경우)
- 감면세 명세서(감면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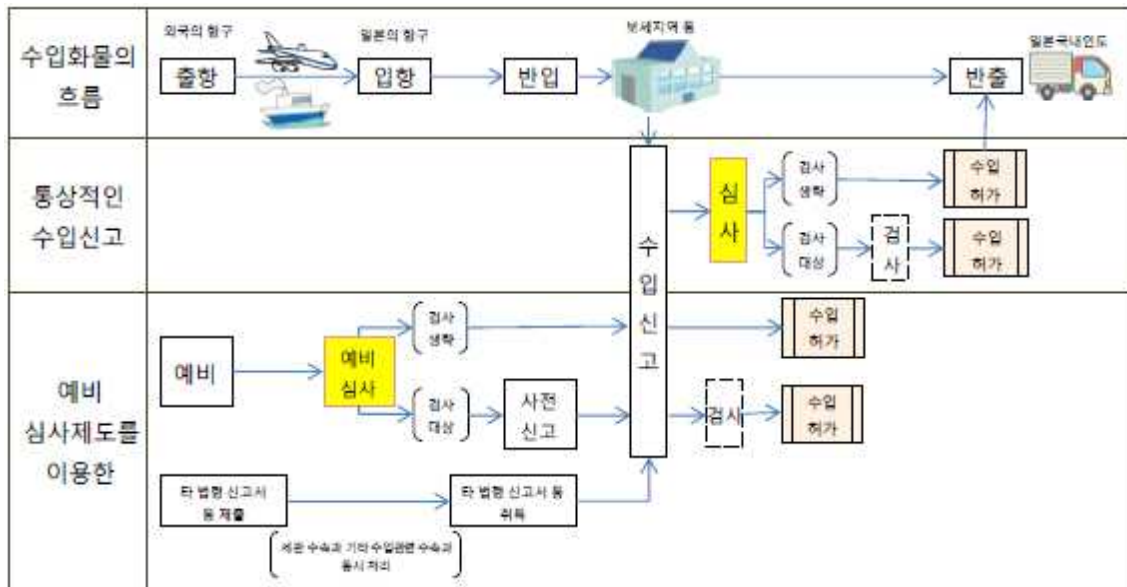
□ 항만 물류 수입 절차

－ 통관 위임 및 보세 지역에 반입

- 선박이 도착하면 선박 회사로부터 도착 통지(Arrival Notice)가 들어옴
- 수출자의 사전 선적 통지(Shipping Advice)가 들어오면, 수입자는 기용한 해운 화물 업자를 정하고, 수취, 통관 수속의 대행을 위임함
- 화환(貨換) 어음계산서 결제의 경우에는 인수 대금 결제 및 상환으로 은행에서 선하증권(B/L) 등 선적 서류를 입수, B/L은 승인을 하고, 해운 화물 업자에게 전달함

- 해운 화물 업자는 B/L 을 선박 회사에 제시하고 D/O (화물 통과 지시서)을 입수 하여, 이것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수, 보세 지역에 반입함
- 만약 B/L이 은행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보증서 (L/G) 등을 선박 회사에 제시하여 짐을 일단 인수, B/L 도착 후 L/G와 교체하도록 함

< 일본 수입 절차 흐름도 >



출처 :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통관과 화물의 국내 수령

- 해운 화물업자는 세관에 "수입(납세)신고서" 및 공급증명서 (Invoice), B/L, 보험 증권, 기타 법령 인허가 상품, 원산지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수입 신고를 함
- 필요한 세관 검사를 받고 관세와 소비세를 납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얻은 후 이를 보세 지역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국내화물로 화물을 수령하게 되며, 보세 운송으로 다른 보세 지역에 전달하고 수입 신고 절차를 하는 경우도 있음
- 계절상품 등 신속한 수령을 희망하는 화물의 경우는 예비 심사 (도착 이전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에 심사 검사 필요 여부의 통지받는 제도) 및 수입 신고 시 담보를 제공하는 “수입 허가 전 수령 승인 제도” 를 이용할 수 있음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인증기관) 화물

- 화물 보안 관리 및 법령 준수 체제 정비가 우수 업체로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화물의 수령 후 소득 신고 등 빠르고 간결한 통관(특례 수입 신고제도)이 가능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인정사업자제도, 기업이 물품관리 차원에서 일정 이상의 보안을 확보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한 수출입업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며, 인정기업은 개별 통관수속보다 간소화된 심사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해당 제도가 상대방 국가와 상호 인정되면 수출입 업자는 자국뿐만이 아닌 상대방 국가에서도 통관 수속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일본의 AEO 제도 >

제도	대상사업자	제도의 개요
특수수입 신고제도	일본의 수입자	화물 도착 전에 신고 및 허가를, 납세신고 전에 화물거래 등이 가능한 제도
특수수출 신고제도	일본의 수출자	화물이 보세지역 밖에 있어도 수출신고를 실시하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특정 보세 승인제도	창고업자	제출에 의한 새로운 보세장치장의 설치, 허가수수료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인정통관 사업자제도	통관업자	간단한 수속을 통해 외국화물 운송이 가능한 제도
특정 보세 운송제도	운송자 등	간단한 수속을 통해 외국화물 운송이 가능한 제도
인정제조자제도	제조자	인정제조자가 제조한 화물에 대해 화물이 보세지역 밖에 있어도 수출신고가 가능한 제도

출처 :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통관업자에게 통관 수속 등을 의뢰했을 때의 요금

(단위: 엔)

통관업무의 종류		단위	요금
(1) 수출(반송) 신고		1건	5,900
	소액화물 간이 통관 취급	"	4,200
(2) 수입 신고		"	11,800
	신고 납세(예비 신고 포함)	"	8,600
	소액화물 간이 통관 취급	"	10,500
	부과 과세	"	7,800
	소액화물 간이 통관 취급	"	7,000
	보세장치장 출고, 종합보세구역 총출고(가공, 제조, 전시품 제외)	"	5,100
	소액화물 간이 통관 취급	"	7,000
(3) 보세장치장 입고 신청		"	7,000
(4) 보세공장 이입 신청		"	7,000
(5) 보세전시장 장치장 등 승인 신청		"	7,000
(6) 종합보세구역 총입고 신청		"	7,000
(7) 수입허가 전 화물 인수 신청		"	5,100
(8) 외국화물선용품 적재 신고		"	5,100
(9) 외국화물 운송 신고		"	5,100
(10) 그 외의 신고 및 신청		"	1,300
(11) 제 신고 또는 허가승인서 사본 작성		"	200
(12) 할증료		"	요금의 50%

출처 : 일본 세관(<http://www.customs.go.jp>)

VI 일본 검역 정보

1. 차류의 수입 관련 규제

□ 차류의 HS코드는 원료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지므로, 수입하려는 제품의 상세 자료와 함께 세관 상담관실에 확인 받는 것이 좋음

□ 식물방역법

－ 수입 절차

- 수입 시에는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에 검사 신청을 실시,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함(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양식에 따름)
- 식물방역소의 검사 결과 병해충 등의 부착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독, 구제,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또한 흙이 붙은 것은 수입 불가함

－ 수입식물검역제도의 개정

- 보다 효율적인 식물검역조치를 위해 2011년 3월 및 2012년 7월에 개정 식물방역법 시행 규칙이 시행되어, 검역유해식물리스트, 식물검역조치 내용의 재검토가 이루어짐

-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a. 검역 대상 병해충을 학명으로 목록화

b. 수입 시의 검사에서 발견은 어렵지만 재배지에서의 검사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검역 대상 병해충종의 숙주식물을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재배지 검사 결과 해당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조사증명서를 첨부

c. 수입 시의 검사에서 발견이 매우 어려운 등, 특히 위험도가 높은 검역대상 병해충

종의 숙주식물을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원칙으로서 수입을 금지함

□ 식품위생법

－ 규제 내용

- 수입 시에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 기준(농약의 각 식품 안에 잔류하는 양의 한도)에 유의해야 하며, 이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후생성 고시 제370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에 규정되어 있음(잔류 농약 등에 관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 잔류 농약 기준치는 「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에서 열람 가능
(<http://www.ffcr.or.jp/zaidan/FFCRHOME.nsf/pages/MRLs-p>)
-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이 허용되는 일정량은 0.01ppm 이하
- 또한 식품첨가물과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질의 함유도 주의를 요함(일본에서는 사용이 규제되어 있는 발색제, 착색료, 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경우가 있음)

2. 견과류의 수입 관련 규제

□ 견과류(땅콩 제외)는 그 종류, 성상(껍질 여부) 등에 따라 HS 코드가 다름

- － 코코 야자, 브라질넛, 캐슈넛(신선, 건조) : HS0801
- －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밤,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등(신선, 건조) : HS0802
- － 견과류를 혼합한 것 : HS0813.50
- － 견과류 조제품 : HS2008.19

□ 식물방역법

－ 수입 절차

- 검역 유해 동식물이 분포하는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일부 견과류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2(수입 금지 지역 및 수입 금지 식물) 제9조)

단, 수입 금지 국가 및 지역이라도 오염 방지 조치가 확실하고 농림수산성이 승인한 경우 등, 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수입 시에는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에 검사를 신청 (수출국 식물 검역 기관이 발행한, 국제 식물 보호 협약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병해충이 부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식물 검역 증명서"가 필요함)
- 식물방역소의 검사 결과 병해충 등의 부착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독, 구제,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또한 흙이 붙은 것은 수입 불가함
- 일부 견과류 가공품은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

□ 땅콩의 수입 시 규제 : 관세정률법/관세감정조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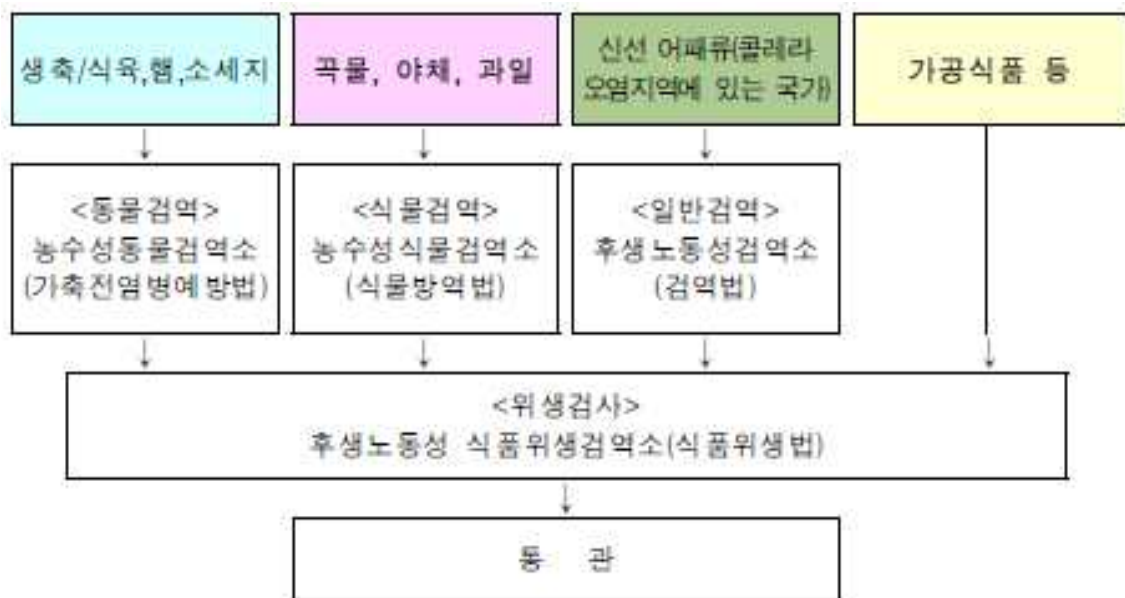
- 관세 할당은 농림수산성이 매년 수입 할당 수량(기본 세율)을 정하여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 물량을 할당, 그 범위를 넘어 수입되는 경우에 높은 관세(이차 세율)를 적용하여 국내 생산자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
- 관세 할당에 의한 기본 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전에 관세 할당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땅콩은 이 관세 할당 제도의 대상임
- 원료용 생땅콩에는 채유용, 일반식용, 종자용이 있음
 - 채유용 생땅콩은 수량 제한은 없고, 관세도 무관세
단, 세관의 감독 하에 채유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함(관세정률법 13조)
 - 일반식용 및 종자용 생땅콩은 관세 할당 제도가 적용되어, 매년 국가가 정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땅콩은 10%의 관세, 수량 범위 외에서 제한 없이 수입하는 땅콩은 617엔/kg의 관세가 부과됨
 - 땅콩 가공 조제품(조림, 튀김, 기타 가공을 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수량 제한은 없지만, 품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됨
 - 후발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땅콩의 수입은 수량 제한도 없고 관세도 부과되지 않음

3. 검역 절차

□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절차

- 일본으로 수입된 가공 식품과 검역을 필한 식품은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검역소에서 수입식품 검사를 받아야 함

< 일본의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검사기관 및 절차 >



출처 : 쌀 가공식품 수출전략 분석 및 수출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

① 수입신고서의 제출

- 수입업자는 식품수입신고서를 식품위생검역소에 제출함

② 수입신고서의 접수

- 식품위생검역소는 식품수입신고서를 수입식품 도착 7일전부터 접수하고 있음

③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지 또는 검사가 필요한지를 심사함
- 서류심사의 결과가 문제가 없고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신고필증이 교부됨
- 검사가 필요한 경우 소정의 검사절차를 거치게 됨

④ 검사

-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종

검사가 실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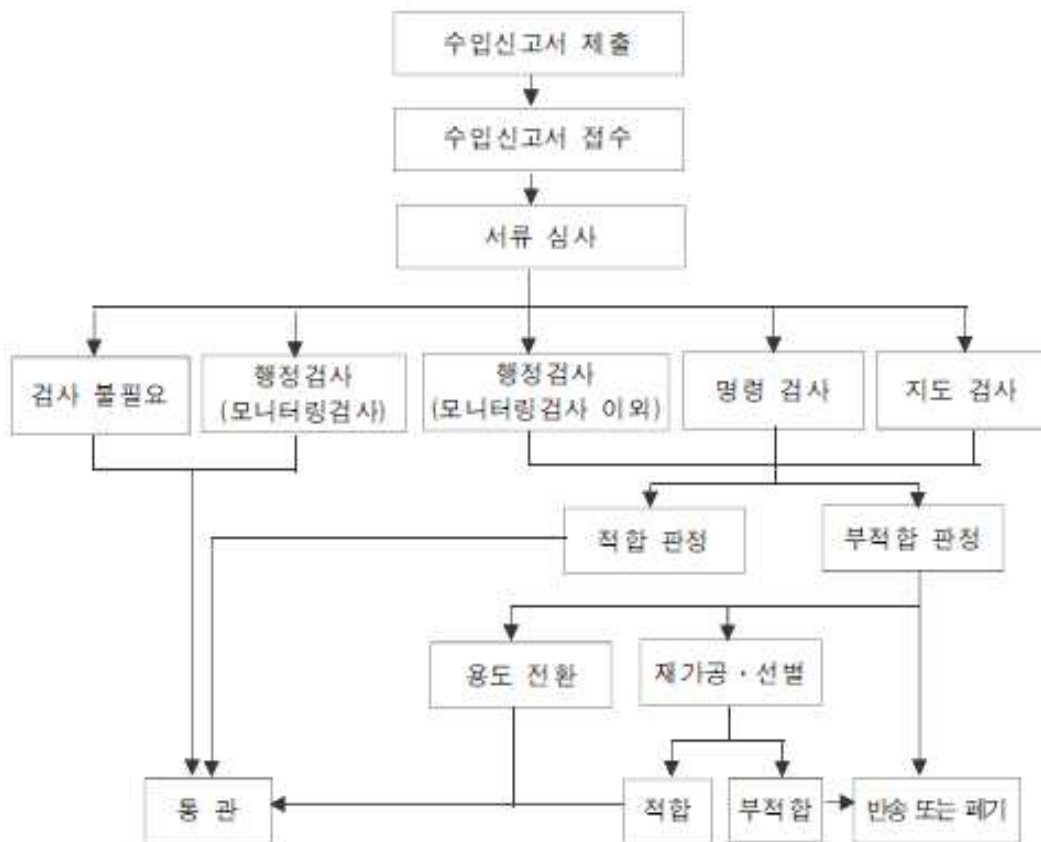
⑤ 검사 결과의 판정 후 절차

- 행정검사 중의 모니터링 검사의 경우 :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입업자에게 위반통지가 전달되고, 위반 물품이 이미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회수 및 폐기 조치됨
- 모니터링 검사 이외의 행정 검사 및 명령 검사의 경우 : 적합 판정 받으면 신고필증이 교부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업자에게 위반내용이 통지되고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 조치되며 세관에도 위반식품 등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통보함

⑥ 지도 검사의 경우

- 수입신고 시에 검역소에 수입업자가 실시한 분석실험결과를 제출하면, 검역소에서 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식품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함

－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 프로세스



출처 :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4. 관련 제도

－ 수입식품사전신고제도

- 모든 식품 등에 대하여 화물 도착 예정 7일전부터 식품 수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전 심사 후 검사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식품 사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화물 도착 전 또는 반입 후에 신속하게 수입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제도임

－ 식품수입계획제도

- 특정 식품 한 수입계획서등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 맨 처음 수입 시에 제출한 수입계획서를(일부 식품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의 수입 실적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일정기간 동안 2번 째 수입부터 수입시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임
- 식품수입계획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식품의 경우에도, 이후 수입과정에서 식품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고의 내용을 기입한 ‘사고발생신고서’를 검역소에 작성·보고 하여야 함

Ⅶ 일본 라벨링 정보

1. 라벨링 규정

□ 가공식품 품질 표시 기준

－ 용어의 정의

■ 가공식품 : 제조 또는 가공된 음식료품으로 다음 것을 말함

- ① 맥류 : 정맥
- ② 분류 : 쌀가루, 소맥분, 잡곡분, 콩가루, 감자 가루, 조제곡분, 그 외의 곡분
- ③ 전분 : 밀전분,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타피오카전분, 사고전분, 그 외의 전분
- ④ 야채가공품 : 통조림, 토마토가공품, 버섯류 가공품, 염장야채(절임 제외), 야채 절임, 야채냉동식품, 건조야채, 야채조림, 그 외의 야채가공품
- ⑤ 과실가공품 : 과신통조림, 잼, 마멀레이드 및 과실버터, 과실절임, 건조과실, 과실냉동식품, 그 외의 과실가공품
- ⑥ 차, 커피 및 코코아 조제품
- ⑦ 향신료 : 후추, 계피, 정향, 육두구, 사프란, 월계잎, 파프리카, 울스파이스, 산초, 카레, 고춧가루, 와사비, 생강, 그 외의 향신료
- ⑧ 면, 빵류
- ⑨ 곡류가공품 : 알파화곡류, 쌀가공품,オート밀, 빵가루, 밀기울, 보리차, 그 외의 곡류가공품
- ⑩ 과자류 : 비스킷류, 구운 과자, 쌀과자, 유과자, 생과자, 건과자, 사탕류, 초콜릿류, 츄잉검, 설탕과자, 스낵 과자, 냉과, 그 외의 과자류
- ⑪ 콩류 조제품 : 팔고물, 콩자반, 두부, 유부류, 유바, 낫토, 콩가루, 땅콩 제품, 볶은 콩류, 그 외의 콩류 조제품
- ⑫ 설탕류 : 설탕, 당밀, 당류
- ⑬ 그 외의 농산가공품 : 곤약, 그 외 ①~⑫에 분류되지 않은 농산가공품
- ⑭ 식육제품 : 가공식육제품, 육류통조림, 가공육류냉동식품, 그 외의 식육제품
- ⑮ 낙농제품 : 우유, 가공유, 유음료, 연유 및 농축유, 분유, 발효유 및 유산균음료,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류, 그 외의 낙농제품
- ⑯ 가공란제품 : 조란의 가공제품, 그 외의 가공란제품
- ⑰ 그 외의 축산가공품 : 벌꿀, 그 외 ⑭~⑯에 분류되지 않은 축산가공품
- ⑱ 가공어패류 : 건조, 염장, 통조림, 냉동, 반죽, 그 외의 가공어패류

- ⑲ 가공해조류 : 다시마, 다시마가공품, 김, 김 가공품, 미역류, 톳, 한천, 그 외의 가공해조류
 - ⑳ 그 외의 수산가공품 : 그 외 ⑱~㉑에 분류되지 않은 수산가공품
 - ㉑ 조미료 및 수프 : 소금, 된장, 간장, 소스, 식초, 조미료, 조미료 관련 제품, 수프, 그 외의 조미료 및 수프
 - ㉒ 식용유지 : 식용식물유지, 식용동물유지, 식용가공유지
 - ㉓ 조리식품 : 조리냉동식품, 냉장식품,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도시락, 반찬, 그 외의 조리식품
 - ㉔ 기타 가공식품 : 이스트 및 베이킹파우더, 식물성단백 및 조미료식물성단백, 맥아 및 맥아추출물, 맥아시럽, 분말주스, 그 외 ㉑~㉓에 분류되지 않은 가공식품
 - ㉕ 음료 등 : 음료수, 청량음료, 얼음, 그 외의 음료
- 업무용 가공식품 : 가공식품 중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로 되어있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함
 - 상미기한 :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보존한 경우에 기대되는 모든 품질의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기한이며, 해당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러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 소비기한 :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보존한 경우, 부패, 변패 및 기타 품질의 열화로 안전성이 결여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기한
- － 가공식품(업무용 가공식품 제외)의 품질에 관하여, 생산업자, 가공포장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함)가 가공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단, 음식료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또는 음식료품을 설비를 설치하여 제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1) 명칭
 - (2) 원재료명
 - (3) 내용량
 - (4) 상미기한
 - (5) 보존 방법
 - (6) 제조업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품질이 급속하게 변화하기 쉬워 제조 후 빠르게 소비해야 하는 것의 경우, 제조업자 등이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위 (4) 대신 소비기한으로 함

- 수입품의 경우, 제조업자 등이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위의 각 사항 외에 원산국명이 있음

－ 각 사항의 표시에 관해 제조업자 등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함

- 명칭 : 그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할 것
- 원재료명 : 사용한 원재료를 아래 구분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기재할 것
 - ① 식품첨가물 이외의 원재료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많은 순서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 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로 구성된 원료(이하 "복합 원재료")는 다음에 따라 기재 할 것
 - a. 복합 원재료의 명칭 다음에 괄호를 붙여 해당 복합 원재료의 원료를 해당 복합 원재료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많은 순서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 해당 복합 원재료의 원료가 3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 원재료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많은 순서가 3위 이하이고, 또한 그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기타"로 기재 가능
 - b. 복합 재료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또는 복합 원재료의 명칭에서 그 원료가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복합 원재료 원료의 기재를 생략 가능
 - ② 식품첨가물은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식품위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 기준에 관한 내각부령(2011년 내각부령 제45호 제1조 제2항 제5호 및 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재함
 - ③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175호, 이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유기농산물(유기농산물의 일본 농림규격(2005년 10월 27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605호) 제3조에 규정하는 것) 또는 유기가공식품(유기가공식품의 일본 농림규격(2005년 10월 27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606호) 제3조에 규정하는 것)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가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이라는 것을 기재할 수 있음
- 내용량 : 특정 상품의 판매에 관한 계량에 관한 정령 제5조에 규정된 특정 상품의 경우, 계량법(1992년 법률 제51호)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내용중량, 내용체적 또는 내용수량을 표시하며, 내용중량은 그램 또는 킬로그램 단위로, 내용체적은 밀리리터 또는 리터 단위로, 내용수량은 개수 등의 단위로, 단위를 명기하여 기재할 것

- 고품량 : 고품량을 그램 또는 킬로그램 단위로, 단위를 명기하여 기재할 것
- 내용 총량 : 내용 총량을 그램 또는 킬로그램 단위로, 단위를 명기하여 기재할 것
-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을 다음에 따라 기재할 것
 - ① 생산에서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에 따라 기재하며, b, c 및 d의 경우로 「.」을 인쇄하기 어려울 때는 「.」을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월 또는 일이 한 자리수인 경우 「0」을 기재할 것
 - a. 헤세이12년 4월 1일
 - b. 12.4.1
 - c. 2000.4.1
 - d. 00.4.1
 - ② 생산에서 상미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기재하며, b, c 및 d의 경우로 「.」을 인쇄하기 어려울 때는 「.」을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월 또는 일이 한 자리수인 경우 「0」을 기재할 것
 - a. 헤세이12년 4월
 - b. 12.4
 - c. 2000.4
 - d. 00.4
 - e. ①의 규정에 따라서도 기재가 가능함
- 보존 방법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에서 보관할 것", "10℃ 이하에서 보관할 것" 등으로 기재 할 것
- 원료원산지명 : 대상 가공식품의 경우, 주요 원재료(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가장 많은 신선 식품이며 또한 그 비율이 50% 이상인 것)의 원산지를 다음 규정에 따라 사실에 입각해서 기재 할 것
 - ① 국산품은 「국산」, 수입품은 원산국명을 기재하며, 국산품의 경우 국산임을 나타내는 기재와 함께 다음 지명을 기재할 수 있음
 - a. 농산물 : 도도부현, 기타 일반적인 지명
 - b. 축산물 : 주된 사육 지역이 속하는 도도부현, 기타 일반적인 지명
 - c. 수산물 : 생산 수역의 명칭, 어획 항구 이름, 도도부현, 기타 일반적인 지명
 - ② 수입 수산물의 경우 원산국명에 수역명을 병기할 수 있음
 - ③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가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많은 순으로 기재할 것
 - ④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가 세 가지 이상 있는 경우,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

율이 많은 순으로 두 가지 이상 기재하며, 그 외의 원산지를 「기타」로 기재할 수 있음

- ⑤ 주요 원재료의 성질 등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략 특정된 원산지를 위 규정에 따라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표기함

- 제조업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제조업자 등 중 표시 내용에 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

- 위 사항의 표시는 다음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 또는 포장의 잘 보이는 곳에 해야 하며, 용기 또는 포장을 포장지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 또는 종이상자 등에 넣는 경우는 포장지 등 또는 상자 등에 필요한 표시를 하고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가 포장지 등에 비취보이게 하거나 포장지 등으로 덮지 않도록 함

- 표시는 다음 양식 또는 이와 비슷하게 알기 쉽도록 일괄하여 기재해야 함

< 표시 양식 >

명	칭
원 재 료 명	
원 료 원 산 지 명	
내 용 량	
고 형 량	
내 용 총 량	
상 미 기 한	
보 존 방 법	
원 산 국 명	
제 조 자	

-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 및 테두리의 색상은 배경 색상과 대조되는 색상으로 할 것
-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는 일본 공업 규격 Z8305(1962)에 규정된 8포인트 이상으로 크기가 통일된 활자로 하며, 표시 가능 면적이 대략 150 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일본 공업 규격 Z8305(1962)에 규정된 5.5포인트 이상 크기의 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명칭은 위 규정에 관계없이 상품의 주요면에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량도 명칭과 같은 면에 기재할 수 있음

- 원재료명, 내용량,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보존 방법, 원료원산지명을 다른 의무 표시 사항과 일괄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 표시 사항을 일괄하여 표시한 부분에 그 기재 부분을 표시하면 다른 부분에 기재할 수 있음
 - 원료원산지명은 주요 원재료명에 대응하여 기재하며, 필요에 따라 주요 원재료명의 다음에 괄호를 붙여 기재할 수 있음
- － 업무용 가공 식품의 의무 표시 사항은 명칭, 원재료명, 제조업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임
- 가공식품(용기 또는 포장의 면적이 30 제곱센티미터 이하의 것에 한함)용으로 제공하는 표시 대상 업무용 가공식품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호의 원재료명 및 제2항의 원료원산지명의 표시를 원재료가 1종류인 표시 대상 업무용 가공식품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호의 원재료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 제조업자 등은 표시 대상 업무용 가공식품의 원재료를 다음에 따라 기재해야 함
- 식품첨가물 이외의 원재료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많은 순서를 알 수 있도록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함
 - 위 규정에 따라 원재료의 기재가 생략되는 가공식품의 복합 원재료의 원재료인 것은 그 원재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식품첨가물 이외의 복합 원재료는 다음에 따라 기재할 것
 - ① 복합 원재료의 명칭 다음에 괄호를 붙여 해당 복합 원재료의 원료를 해당 복합 원재료의 원료 중 차지하는 중량의 비율이 많은 순서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하며, 해당 복합 원재료 중 「기타」라고 기재되는 가공 식품의 복합 원재료의 원재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타」라고 기재할 수 있음
 - ② 복합 원재료의 원료 중 원재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그 원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식품첨가물은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많은 순서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함
 -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 유기 농산물 또는 유기 가공 식품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가 유기 농산물 또는 유기 농산물 가공 식품임을 기재할 수 있음

- 특색 있는 원재료 등의 표시

- 특정 원산지의 것, 유기 농산물, 유기 축산물, 유기 가공 식품, 기타 사용한 원재료가 특색 있는 것임을 표시하는 경우 또는 제품의 명칭이 특색 있는 원료를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비율을 해당 표시에 근접한 개소 또는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를 붙여 기재하며, 그 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비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① 특색 있는 원재료가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
 - ② 특색 있는 원재료 및 특색 있는 원재료와 동일한 종류의 원재료를 합친 양에서 특색 있는 원재료가 차지하는 중량의 비율(이 경우 그렇다는 설명을 기재)
- 특정 원재료의 사용량이 적음을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원재료의 제품에서 차지하는 무게의 비율을 해당 표시에 근접한 곳 또는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를 붙여 기재할 것

- 표시 금지 사항

- 제3조 또는 제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과 모순되는 용어
- 산지 이름을 나타내는 표시이며, 산지 이름의 의미를 오인시키는 표시
- 기타 내용물을 오인시키는 문자, 그림, 사진 기타 표시
- 지붕 형태 종이팩 용기의 상단 일부분을 한 군데 절단한 표시

- 제조업자 등의 노력 의무

- 제조업자 등은 가공식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그 판매하는 가공식품 및 해당 제조업자 등에 판매된 음식료품의 표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정비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함

□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국외의 제조자가 설정하는 기한 등을 기본으로 해당식품 등의 기한의 설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제조자 등에게 확인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미생물 시험이나 이화학시험 및 관능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를 둔 적절한 기한을 설정하여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 기한을 표시해야 함
- 제조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경우는 년. 월. 일 로 표기하고, 3개월 이상은 년. 월로 표시

2. 관련 정책

□ 약사법

- 허브 원료 등의 의학적 효과 효능을 강조하여 의약품으로서 수입 판매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약사법에 근거한 「제조 판매업 허가」가 필요하며, 또한 수입 후 포장, 표시, 보관을 할 경우 「제조업 허가」가 필요
 - 일본 약전(의약품의 규격 기준서)에 등재되어 있는 것 이외의 것은 후생노동대신에 의한 품목 승인이 필요
 - 의약품 또는 식품 여부 판단은 후생노동성 통지 「무승인 무허가 의약품 지도 단속 정보」에 따라 이루어짐
 - 판매 시에는 약사법에 근거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 알레르기 물질 표시 제도

- 음식에 포함된 알레르기 물질(단백질)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식품 알레르기 환자의 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는 증례 수가 많은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식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증례 수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도 표시를 장려하고 있음
- 대상 품목(2013년 9월 20일 기준)
 - 특정 원재료(표시 의무) : 계란, 우유, 밀, 새우, 게, 메밀, 땅콩
 -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표시 장려) : 전복, 오징어, 캐비어, 오렌지, 캐슈넛, 키위, 쇠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콩,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참마, 사과, 젤라틴
- 표시
 - 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용기 포장 된 우유, 유제품, 우유 등을 주요 원료로 하는 식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식품 등(알콜 음료 제외)이며, 유

통 과정인 것도 표시가 의무화

- 식품의 표시는 JAS법 등 다른 법령에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은 그 규정에 따라 표시
- JAS법에서는 복합 원재료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원재료를 생략할 수 있거나 단체 원재료에도 특정 원재료 등의 대체 표기로 인정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유통 과정에 있는 식품 및 원재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위생법상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는 미량이라도 생략하지 않고 모든 유통 단계에서 표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식품첨가제 및 특정 원재료 등이 있는 경우, 일괄표시란의 원재료란에 기재해야 함

- 대체 표기, 특정 가공식품

- 표시명은 식품명 대신 대체 표기 및 특정 가공식품명이 인정되고 있으며, 단, 해당 표기, 음식명에는 규정이 있어 계란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a. 대체 표기 : 계란, 달걀, 오리란, 메추리알 등
 - b. 특정 가공식품 : 마요네즈, 오믈렛, 계란후라이, 오야코동, 오프라이스 등
- 특정 원재료 7 개 품목에 유래하는 식품첨가물은 표시 의무가 없는 캐리 오버(사용하는 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며 최종 제품에는 남지만 그 안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 및 가공조제(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며, 최종 제품의 완성 전에 제거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 해도 최종 제품까지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음
- 최종 제품에 포함된 특정 원재료 등의 총 단백질 함량이 수 $\mu\text{g/ml}$ 의 농도 수준 또는 수 $\mu\text{g/g}$ 함유 수준($1\mu\text{g/ml} = 1\mu\text{g/g} = 1\text{ppm}$) 미만인 경우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식품 제조 과정에서 특정 원재료 등이 의도하지 않게 혼입되어 버리는 경우(오염)가 있는데, 이 경우 충분한 오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도모하는 것이 대전제
 - 반드시 혼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표시를 해야 하며,

- 충분한 대책을 도모하였으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의 환기 표시를 해야 함
- 위 경우에도 혼입 빈도와 양이 적은 경우에는 표시 할 필요가 없음

□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경품 표시법)

- 과도한 경품 첨부 판매와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 허위 표시 등이 금지되며, 또한 동법에 따라 “식품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을 업계 자주 기준으로 작성

□ 자원 활용 전략 / 용기 포장 재활용 법

- 유리병, 종이 용기, 플라스틱 용기 등은 의무적으로 분리수거 촉진을 위한 물자 식별 표시를 해야 하며, 특정 사업자(수입 포함)는 용기 폐기물 재상품화의 의무를 짐

□ 자원유효이용 촉진법 등의 표시

- 용기포장 리사이클 법에 의해 분리 배출 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표시를 하도록 함

< PET병을 제외한 용기포장 >



< 음료, 주류, 간장 등의 PET병 >



VIII 일본 바이어 정보

※ 바이어 리스트는 별도 엑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글로벌 윈도우 : www.globalwindow.org
- 주한일본기관 : www.jetro.go.jp/korea/co/jp
- 관세청 : www.customs.go.kr
- GTA : www.tradestatistics.com/gta
- 일본 후생노동성 : www.mhlw.go.jp
- 일본 소비자청 : www.caa.go.jp
- 일본 세관 : www.customs.go.jp
- 일본 야노경제연구소 : www.yano.co.jp
- 일본 작두콩 협회 : www.natamame.org
- 일본 견과협회 : www.jna-nut.com
- 라쿠텐 : www.rakuten.com
- 야후채판 : shopping.yahoo.co.jp
- 아마존채판 : www.amazon.co.jp
- KOTRA : www.kotra.or.kr
- KATI : www.kati.net